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

제정 2006년 12월 28일

개정 2021년 8월 24일



# EL265 : 2021 LED 전광판





---

제 정 자: 환경부장관  
제 정: 2006년 12월 28일 환경부고시 제2006-210호  
최 종 개 정: 2021년 8월 24일 환경부고시 제2021-164호  
원안 작성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이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또는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친환경생활처(전화 1577-7360)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 목차

머리말 .....	0
1 적용 범위 .....	1
2 인용 표준 .....	1
3 용어와 정의 .....	1
4 환경 관련 기준 .....	2
4.1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	3
4.2 정격소비전력 .....	3
4.3 휘도조절기능 .....	3
4.4 부품공급 및 사후서비스 체계 구축 .....	3
4.5 합성수지 .....	4
5 품질 관련 기준 .....	4
5.1 휘도 .....	4
5.2 색도 .....	4
5.3 안전 및 성능 .....	4
6 소비자 정보 .....	5
7 검증방법 .....	5
8 시험방법 .....	5
9 인증사유 .....	7
부속서 A(참고) XYZ 표시계의 색도좌표 .....	8

## 머리말

이 기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증기준설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된 **환경표지 인증기준**이다.

이에 따라 **EL265. 발광다이오드 전광판【EL265-2006/1/2012-36】**은 개정되어 이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환경표지 인증기준

EL265:2021

## LED 전광판

## Light Emitting Diodes Display Board

##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상용전원에 접속하여 LED를 광원으로 하는 전광판(이하, “전광판”이라 한다.)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A 0061, XYZ색 표시계 및 X10Y10Z10 색 표시계에 따른 색의 표시 방법

KS A 0068, 광원색의 측정방법

KS C 7120, 발광 다이오드(표시용)

KS C 1601, 조도계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

KS C 7659, 문자간판용 LED 모듈의 안전 및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 — 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

KS C IEC 62321-4,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4부: CV-AAS, CV-AFS, ICP-OES 또는 ICP-MS에 의한 폴리머, 금속 및 전기전자 제품에서 수은의 정량

KS C IEC 62321-5, 전기전자 제품에서 특정 물질의 정량 — 제5부: AAS, AFS, ICP-OES 또는 ICP-MS에 의한 폴리머와 전기전자 부품에서 카드뮴과 납 및 크로뮴의 분석과 금속에서 카드뮴과 납의 분석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IEC 62321-7-1:2015, Determination of certain substances in electrotechnical products — Part 7-1: Hexavalent chromium — Presence of hexavalent chromium (Cr(VI)) in colourless and coloured corrosion-protected coatings on metals by the colorimetric method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파법」에 따른 국립전파연구원고시

##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 3.1 전광판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여 문자나 동영상 등을 표현하는 시스템  
**비고** 영상 제어장치, 컨버터 등을 포함한다.

### 3.2 영상제어 장치

전광판에 표현되는 정보를 제어하는 장치

### 3.3 전광판 모듈

전광판을 구성하는 최소단위

**비고**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이며, 한글 한 자 이상을 표현할 수 있다.

### 3.4 정격소비전력

표준 운전 조건으로 전광판을 점등시킨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

### 3.5 표준 운전 조건

신청인이 제시한 LED의 규격에서 KS C 7120에 따른 전기광학적 특성 내 정격치 이하의 값으로 전광판에 사용되는 LED를 모두 점등시킨 상태

### 3.6 옥내용(실내용)

건물 내부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

### 3.7 옥외용 (실외용)

건물 외부에서 사용하는 것

### 3.8 색도

눈으로 느끼는 색(색감 또는 색 자극) 중에서 색 자극(색 밝기)을 무시한 색의 성질

### 3.9 색도좌표

국제조명위원회(CIE, Commission International de l'Eclairage)에서 색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낸 좌표 수치로서 3개의 단색광(빨강, 초록, 파랑)을 기본색으로 하여 이들 색의 배합을 좌표형식으로 표현한 것

## 4 환경 관련 기준

LED 전광판의 전과정 단계를 고려한 환경성 항목은 표 1과 같다.

표 1 LED 전광판의 전과정 단계별 환경성 항목

전과정 단계	환경성 항목	환경 개선 효과
원료취득	-	-
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물질 사용 감소</li> </ul>
유통·사용·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격소비전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절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휘도조절기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빛공해 저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품 공급 및 사후서비스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물 발생 감소</li> </ul>
폐기	-	-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성수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성 향상</li> </ul>

## 4.1 유해물질 제한 및 관리

### 4.1.1 사용 금지 물질

제품에는 다음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제외 대상'과 인쇄회로기판에 시행된 솔더링(soldering)의 납에는 해당 항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a)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이들의 화합물, 6가 크로뮴(Cr<sup>6+</sup>) 화합물
- b) 폴리브로모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로모다이페닐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염소농도 50 % 이상인 단쇄염화파라핀[SCCP, short-chain chlorinated paraffins(C=10~13)]

### 4.1.2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원료를 포함한다.)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sup>6+</sup>)은 표 2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원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부품에 대한 수입검사 및 공정관리 등의 사내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문서로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비고** 사내표준에는 유해원소의 종류와 기준, 관리 주기, 처리방법, 문서관리 등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표 2 유해원소 함량 기준

항목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 크로뮴(Cr <sup>6+</sup> )
기준 (mg/kg)	1 000 이하	100 이하	1 000 이하	1 000 이하
<b>비고</b> 총 크로뮴(Cr)의 함량이 1 000 mg/kg 이하이거나 고분자에서 총 크로뮴이 검출되지 않으면 6가 크로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4.2 정격소비전력

전광판의 정격소비전력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P \leq A_L \times \left( F_L \times I \times \sqrt{\frac{\theta_R}{\theta_B} + 250} \right)$$

여기에서,

P: 정격소비전력(W)

A<sub>L</sub>: 발광부의 총 면적(m<sup>2</sup>)

I: 수평 가시각 0°에서 전광판의 휘도(cd/m<sup>2</sup>)

F<sub>L</sub>: 광도와 소비전력의 비율(W/cd). 옥내용은 0.4, 옥외용은 0.05

θ<sub>R</sub>: 휘도 I의 50 %가 되는 수평 가시각(°). 좌·우 중 작은 값을 적용

θ<sub>B</sub>: 기준 수평 가시각(°). 옥내용은 50°, 옥외용은 30°

## 4.3 휘도조절기능

외부조건에 따라 제품은 자동으로 휘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 4.4 부품 공급 및 사후서비스 체계 구축

고장이나 파손 등에 대비하여 모듈, 컨버터 등의 주요 부품 공급처 현황 리스트 및 애프터 서비스 및 폐기물 처리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5 합성수지**

- a) 질량 25 g 이상이며 평탄한 부분의 면적이 200 mm<sup>2</sup> 이상인 합성수지는 폐기할 때 분리·회수할 수 있도록 분리되는 각 부분에 재질 분류 표시를 하여야 한다.
- b) 하우징을 구성하는 25 g 이상의 합성수지 부품은 염화비닐수지(PVC, polyvinyl chloride) 등 할로젠계 합성수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합성수지 내에 할로젠 화합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질량분율로서 0.5 % 이하의 유기불소 첨가제는 허용한다.

보기 anti-dripping agent의 유기불소 첨가제

**5 품질 관련 기준**

**5.1 휘도**

제품의 휘도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a) 모듈 간 휘도 편차는 ± 5 % 이하이어야 한다.
- b) 용도별 제품의 휘도는 표 3의 각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전광판의 휘도 기준**

용도	가시각 (°)	전광판의 휘도 (cd/m <sup>2</sup> )
옥내용	정면 (0°)	600 이상
	좌/우 50°	300 이상
	하향 40°	
옥외용	정면 (0°)	6 000 이상
	좌/우 30°	3 000 이상
	하향 20°	

**5.2 색도**

제품의 색상별 색도는 표 4의 색도좌표(1~4)를 연결한 부속서 A의 범위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4 전광판의 색도 기준**

색상	색도좌표	1	2	3	4
빨강	x	0.730	0.627	0.569	0.655
	y	0.270	0.283	0.341	0.345
초록	x	0.405	0.372	0.209	0.013
	y	0.585	0.493	0.383	0.486
파랑	x	0.068	0.220	0.230	0.150
	y	0.200	0.285	0.205	0.040
하양	x	0.280	0.245	0.360	0.390
	y	0.220	0.300	0.400	0.330

**5.3 안전 및 성능**

제품과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은 해당 안전 및 성능 관련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4 절(환경 관련 기준)과 관련된 항목은 제외한다.

- a) 제품은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것이어야 한다.

- b) LED 모듈은 KS C 7659의 6.4(구조), 6.5(내열성, 내화성) 및 7.4.2(점멸 수명)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전체 또는 일부의 적용이 어려울 때는 **인증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품질이 우수함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항목을 제외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6 소비자 정보

### 6.1 제품 교체, 조립 구조 및 폐 제품 수거 정보

제품의 교체, 조립 및 폐 제품의 수거 방법(수거 기업 전화번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2 제품의 성격, 사용 장소 정보

- a) 인증을 받은 모델과 같은 제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사양(사용된 모듈의 치수, 정격소비 전력 등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b) 제품의 정격소비전력 또는 영상표출 장치의 크기로 환산한 소비전력 및 사용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6.3 휘도 조절 기능

휘도 조절방법과 조절범위는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6.4 인증사유

제품의 인증사유를 카탈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환경영향 저감에 기여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7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은 표 5와 같다.

표 5 인증기준 항목별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		검증방법	
환경 관련 기준	4.1	4.1.1	제출 서류 확인
		4.1.2	제출 서류 확인 또는 8.2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2		8.1 및 8.3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4.3~4.5		제출 서류 확인
품질 관련 기준	5.1~5.2		8.1 및 8.4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5.3	a)	제출 서류 확인
		b)	8.5에 따른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제출 서류 확인
소비자 정보		제출 서류 확인	

## 8 시험방법

### 8.1 일반사항

-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는 시험 시료 수를 추가할 수 있다.
- b) 시험 시료는 가로가 세로보다 긴 구조로서 발광부의 총 면적 0.3 m<sup>2</sup>이상으로 하되, 시

료 총량이 50 kg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크기 범위까지로 한다.

- c)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 d)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측정할 때 주위온도는 25 °C로 한다.
- e)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뱃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뱃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뱃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8.2 구성 부품의 유해원소

### 8.2.1 납(Pb) 및 카드뮴(Cd)

KS C IEC 62321-5에 따라 시험한다.

### 8.2.2 수은(Hg)

KS C IEC 62321-4에 따라 시험한다.

### 8.2.3 6가 크로뮴(Cr<sup>6+</sup>)

KS C IEC 62321 부속서 C '비색법에 의한 고분자와 전자제품에서의 6가 크로뮴의 검출'에 따라 시험한다.

## 8.3 정격소비전력

- a) 시험 시료를 시험용 전원과 접속된 전력 측정 장비에 연결한다.

**비고** 시험용 전원은 고조파 함유율이 3 % 이하인 정현파이어야 하며, 측정설비 오차범위는  $\pm 0.5$  % 이내이어야 한다.

- b) 시험 시료의 설치 및 휘도의 측정 등 기타 시험 방법은 이 기준의 8.4를 따른다.
- c) 시험 시료의 표준 운전 조건에서 정격소비전력을 측정한다.

## 8.4 휘도 및 색도

휘도와 색도는 표준 운전조건에서 각 모듈별 중앙/평균인 LED를 모두 점등시킨 다음 안정된 상태에서 아래에 따라 측정한다.

- a) 휘도 편차는 시험 시료를 구성하는 각 모듈 개수별로 중앙부위에 대하여 휘도계로 측정한다. 이 때 위치별 편차가 줄어드는 목적으로 측정면적은 5 cm<sup>2</sup>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시험장비 제한 등으로 인해 휘도 편차 측정이 어려운 경우, 조도 편차를 통해 가늠한다.

**비고 1** 조도측정용 조도계는 KS C 1601에서 정한 일반용 AA급 또는 동등이상을 사용한다.

**비고 2** 조도계 측정 시 모듈 간 간섭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모듈에서의 빛 간섭이 최소화를 위해, 면적으로부터 10 cm 떨어져 측정하는 것을 권장하며, 조도계 내 확산판 위에 적당한 흑색 원통을 설치하여 측정하고, 기타 세부 사항은 KS C 1601에 따른다.

- b) a)의 시험결과 평균값에 가까운 모듈을 지정 후, 휘도를 측정한다. 다만, 측정 모듈의 단축을 측정면적의 지름으로 적용한다.
- c) 휘도는 수평과 수직 회전축을 기준으로 시험시료를 회전시켜가며 측정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KS C 7613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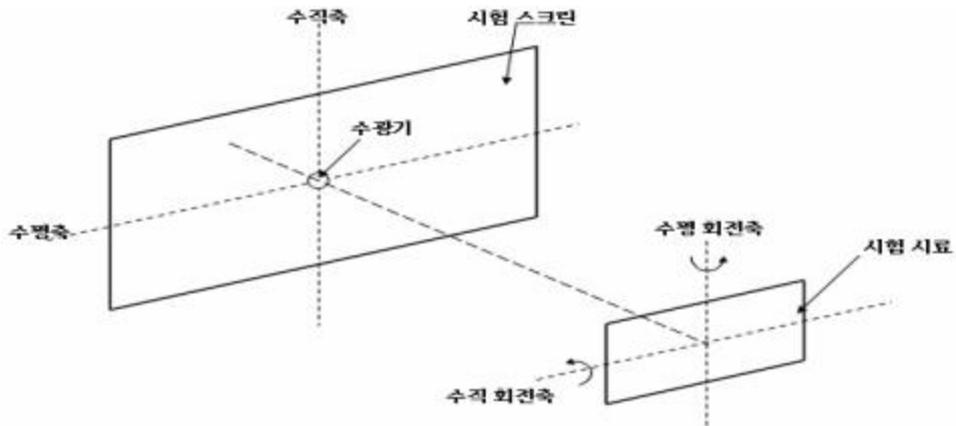


그림 1 휘도 시험방법 예

d) 색도 측정은 KS A 0068에 따른다.

### 8.5 LED 모듈

KS C 7659에 따라 시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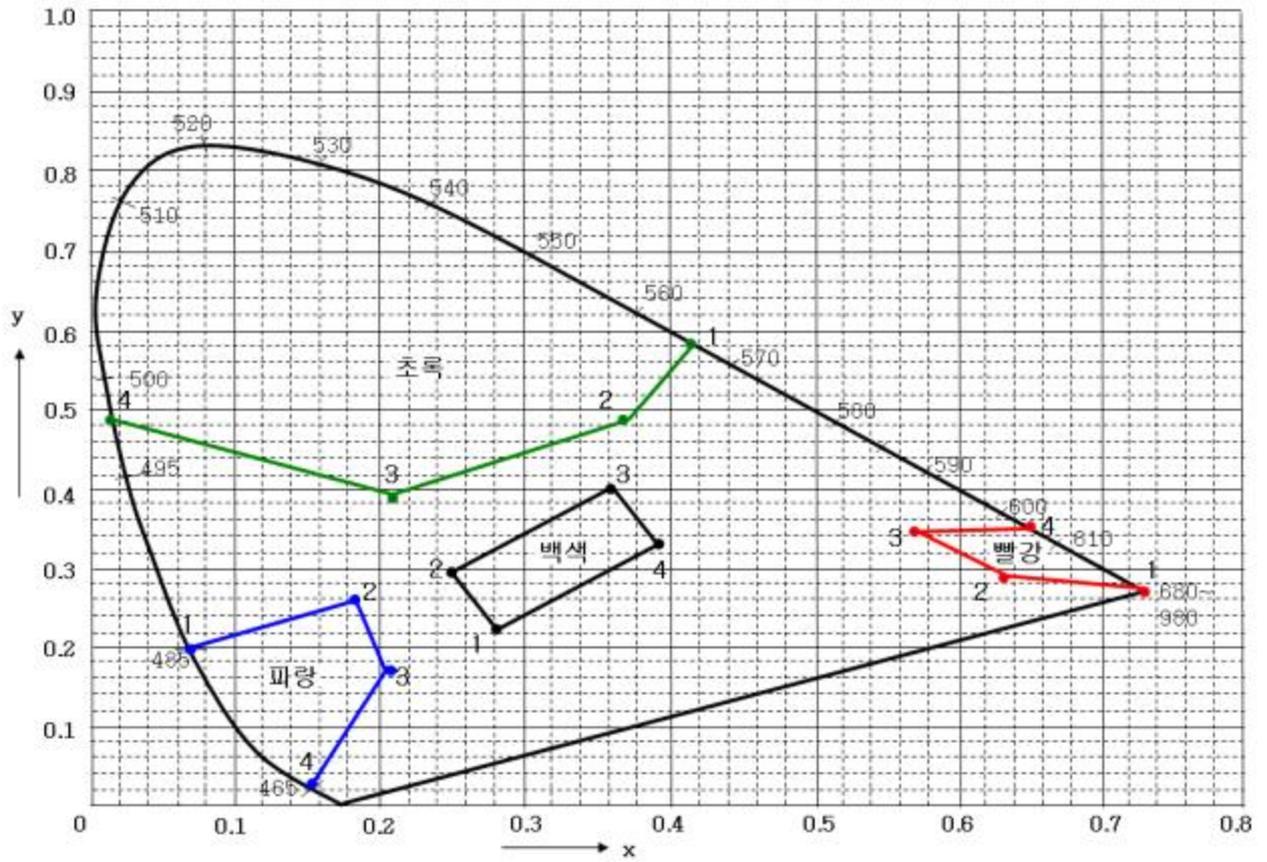
## 9 인증사유

인증사유 범주 구분	자원순환성 향상 <sup>a</sup>	에너지 절약 <sup>b</sup>	지구 환경오염 감소 <sup>c</sup>	지역 환경오염 감소 <sup>d</sup>	유해물질 감소 <sup>e</sup>	생활 환경오염 감소 <sup>f</sup>	소음·진동 감소 <sup>g</sup>
해당 여부		●			●	●	
<sup>a</sup>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 <sup>b</sup>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sup>c</sup>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 <sup>d</sup>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가 잘 됨 등 <sup>e</sup>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 <sup>f</sup>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 <sup>g</sup> 저소음, 진동 감소							

부속서 A  
(참고)

XYZ 표시계의 색도좌표

A.1 KS A 0061에 따른 XYZ 표시계의 색도좌표



## [공통기준]

1.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기간 동안 환경규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내용, 위반내용에 대한 개선대책 및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가. 소재 지역의 환경규제기준 목록
  - 나. 환경규제기준 이행 체계(조직도에 역할 등을 기재한 것)
  - 다. 환경규제기준 이행 기록문서 보관 규정
2.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정한 ‘소비자 정보’ 표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품 관련 ‘소비자 정보’는 제품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 표면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품 포장, 제품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 정보’는 서비스 운영 사업장 건물 내·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외부에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납품서, 보증서 및 홍보물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3. 환경표지 인증을 받으려는 자나 인증을 받은 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0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도록 인증제품을 고유한 상표(모델)명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 원료나 사용 장소 등의 제한기준이 있거나 제품 생산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과 해당 규정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5.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서 인용된 각종 규격은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인증을 신청할 때의 최신 규격을 적용한다. 또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규제기준이 대상제품별 인증기준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기준을, 기준 폐지 등의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해당 인증기준이 개정되기 전까지 잠정 적용한다.
6.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따른 품질 관련 표준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술원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 [인증기준에 따른 검증 방법]

1. 규정된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말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로 검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술원장이 지정한 전문가의 입회하에 확인·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제도에서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예: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지정·인정한 시험·검사기관
  - 라. 국제표준 ISO/IEC 17025에 적합한 외국의 시험·검사기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에서 시험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2. 제1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시험·검사기관은 기술원장이 시험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원장의 요청을 거부하는 시험·검사기관에 대하여는 시험의뢰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출 서류 확인은 환경표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제품과 관련한 인증서, 사용설명서나 안내서 또는 제품 등으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서비스일 경우 실적 자료, 증빙 서류 및 현장 사진 등을 포함할 수 있다.
4.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원료나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모델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원료나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종전 검증 결과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시험성적서는 인증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5.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6.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인증하려는 경우, 기술원장은 제품 단위 내의 모델 가운데 하나를 임의 선정하여 대표로 검증한다. 다만, 모델별로 환경성 및 품질 정보의 일부가 서로 달라 영향을 미치는 환경 관련 또는 품질 관련 기준항목은 각각의 모델별로 검증한다.
7. 대상제품별 인증기준에 폐재 사용률이 설정된 경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재로 본다.
8.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출한 서류만으로 검증이 곤란하거나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호에 준하는 시험으로 검증한다. 이 경우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차례에 따른 표준의 시험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 가. 한국산업표준
  - 나. 한국산업표준 이외의 국가표준
  - 다. 국제표준
  - 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
  - 마. 기술원장이 인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